

2019.06.03

## '입국장 면세점' 이용 관련 사항 안내

### I. 개요

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됨에 따라 '입국장 면세점 설명회 현장 질문 · 답변' 과 운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II. 주요사항

#### 1. 배경 및 취지

- 여행기간 동안 휴대해야하는 국민들의 불편해소
-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

#### 2. 이용 관련 사항

##### 1) 입국장 면세점 이용 관련 사항

- ▶ 입국장 면세점 內 \$600 이하 물품 판매 및 구매 가능
  - 단, 술 · 향수는 별도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 
(주류: \$400불 및 1L 이하, 향수 60ml 이하)
  -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임
  - 입국장 면세점 內 개인별 구매내역 표시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추가 세금 납부 의사가 있더라도 \$600 초과할 수 없음
  - 출국장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 각 1병 (총 2병) 구매 가능하나  
입국 시 면세범위 (\$600)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 대상에 해당
- ▶ 입국장 면세점 內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
- ▶ 개인 수하물 수취 후 면세점 이용 가능

2019.06.03

## '입국장 면세점' 이용 관련 사항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이용 관련 사항

##### 3) 여행자 휴대품 면세 관련 사항

-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: 미화 600달러 (\$600)
-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불 추가로 인한 인당 구매한도 총 3600불임
- 외국이나 면세점(시내,출국장,입국장)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\$600 초과할 경우, \$6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
- 주류 1병 (1L 이하로서 \$400 이하), 담배 (궐련 200개비 이내), 향수 (60ml 이하) 는 면세범위 (\$600) 이외 별도 면세 가능

##### 4) 추가 기타 사항

###### ▶ 자진신고 감면

- 면세 범위 초과 구매 후 자진신고 시 관세 30% 감면 (15만원 한도)
-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%,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% 부과  
(가산세 부과 기준 :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납부 세액)

###### ▶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

-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,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
- 자진신고 전용 통로 개설

◇ 구매한도 및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 우선공제 관련 예시 : “붙임”

◇ 관세청 담당자 : 특수통관과 (042-481-7830,7831)

## 첨 부

- ① 구매 한도 :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6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,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

[사례1] 가방 \$300, 의류 \$290 구매가능 여부

☞ 총 구매금액이 \$590로 구매한도 \$6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!!

[사례2] 가방 \$300, 의류 \$290, 잡화 \$30 구매가능 여부

☞ 총 구매금액이 \$620로, 구매한도인 \$6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!!

[사례3] 가방 \$300, 의류 \$290, 술 \$330, 향수 \$50 구매가능 여부

☞ 총 구매금액이 \$970로 구매한도 \$600을 초과하였지만,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!!

- ②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 우선공제

- 외국인이나 면세점(시내, 출국장, 입국장 포함)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\$600을 초과하는 경우, 면세범위인 \$600을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. 다만,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였다면,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

[사례1] 가방 \$600(시내면세점), 의류 \$600(해외), 국산 화장품 \$600(입국장면세점)을 구매한 경우

☞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\$600공제(가방, 의류는 과세)

[사례2] 가방 \$600(시내면세점), 의류 \$600(해외)을 구매한 경우

☞ 의류 구입가격(\$600)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(가방 \$600)에 대해서는 과세

\* 간이세율이 의류 25%, 가방 20%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

[사례3] 가방 \$600(시내면세점), 의류 \$600(해외), 외국산 선글라스 \$600(입국장면세점)을 구매한 경우

☞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(의류 \$600 공제) \* 선글라스 간이세율 20%

- 외국이나 출국장·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 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. 다만,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,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

[사례1] 양주 1병(해외구매), 국산 토속주 1병(입국장면세점 구매)

☞ 국산 토속주는 면세, 양주는 과세

[사례2] 양주 1병(해외구매), 향수 1병(시내면세점 구입)

☞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